비밀유지계약서 (NDA)

본 비밀유지계약서(이하 "본 계약")는 ㈜비에스지 파트너스(이하 "갑")와 주식회사 ABC(이하 "을")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다.

다음

제 1 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**갑**과 **을**이 『**{업무 요지 기재}**(이하 "본 업무")』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비밀정보의 정의)

- ① "비밀정보"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또는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가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기술적, 경영상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기술적, 경영상 정보를 의미한다.
- ② 비밀정보는 서면, 구두, 도면, 설계, 실험 결과, 데이터, 프로그램, 거래 내역 등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며, 물리적 자료나 장비 또한 비밀정보에 포함된다.

제 3 조 (비밀의 표시)

- 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경우, 해당 서면에 "비밀", "대외비" 등의 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② 구두 또는 시각적으로 제공된 정보는 비밀임을 즉시 고지하고,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정보임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 4 조 (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)

- ①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본 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한다.
- ② 제 3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려면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, 제 3 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에 제공해야 한다.
- ③ 비밀정보는 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에 한해 접근을 허용하며, 해당 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알리고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의무)

- 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 체결 사실, 내용, 본 업무 등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공표할 수 없다. 다만, 아래 각 호의 정보는 비밀유지의무에서 제외된다.
 - 1. 공개 이전에 이미 공지된 정보
 - 2. 비밀정보 제공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공지가 된 정보
 - 3. 제 3 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
 - 4.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
 - 5. 비밀로 고지되지 않거나,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은 정보
 - 6. 법원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
- ②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,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 6 조 (자료의 반환)

①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상대방의 요청 시 즉시 반환하거나,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폐기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반환 또는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며, 비용을 선지출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7 조 (권리의 부존재)

- ①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으며, 본 계약은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.
- ② 본 계약은 향후 어떠한 계약 체결을 암시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.
- ③ 제공자는 비밀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할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.
- ④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할 경우, 그 규정과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.

제 8 조 (계약기간)

-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간 효력을 가진다.
- ②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제 4 조, 제 5 조 및 제 7 조의 의무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.

제 9 조 (손해배상)

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제 10 조 (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)

- ①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
제 11 조 (계약의 분리가능성)

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, 나머지 조항의 유효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.

제 12 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본 계약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, **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**을 제 1 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한다.

20년월일	
	㈜BSG 파트너스
	대표이사:
	서명:

죾	^E 식회사 <mark>ABC</mark>
대표:	
서명:	